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전화번호, 이메일, 주소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라. 제출의견 보내실 곳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(우편번호 : 30108)

4. 그 밖의 사항

자세한 사항은 전화(044-200-4411), FAX(044-200-4475) 또는 전자우편(ausmf@korea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◉금융위원회공고제2020-378호

공고내용 정정

관보 제19850호(2020.10.7.)에 게재된 "금융위원회공고제2020-368호(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(공시송달)"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0년 10월 15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1. 정정내용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◉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-368호	◉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-372호	관보 제19850호(2020.10.7.) 472쪽, 위에서 25번째줄

2. 참고사항

□ 공고번호 오기재에 따른 단순 공고번호 정정으로, 공고의 내용은 관보 19851호(2020.10.8.)에 재게재된 "금융위원회공고제2020-372호(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(공시송달)"와 동일합니다.

□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02-2100-2967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◉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-57호

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5일
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

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종사자 개인이 받는 총 피폭선량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 기록 시, 타 법에 따라 측정된 피폭선량이 유효하게 되도록 판독대상에 포함 (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제4호 신설)

나. 방사선작업종사자 이직 시 과거 피폭방사선량 기록을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(시행규칙 제122조제2항 신설)

다. 최저측정준위 이상의 선량값이 개인 기록에 포함되도록 기록준위를 변경 (시행규칙 별표2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1) 일반우편 : (03154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,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

2) 전자우편 : jhahn0202@korea.kr

3) 팩스 : 02-397-734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(전화 02-397-7273, 팩스 02-397-734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◉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-58호

「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5일
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

「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종사자등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인 기록준위를 최저측정준위로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최저측정준위 이상의 선량값이 개인 기록에 포함되도록 기록준위를 변경 (고시 제9조제1항제2항)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1) 일반우편 : (03154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,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

2) 전자우편 : jhahn0202@korea.kr

3) 팩스 : 02-397-734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(전화 02-397-7273, 팩스 02-397-734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